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517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Q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2990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2020. 11. 30.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0. 12. 1. 접수 제1528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위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채무자인 소외 C의 채무 면탈을 위한 ‘타익신탁’에 해당하며, 타익신탁의 경우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황이 초래되면 사행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1차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소외 C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단순한 타익신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의 경우 1차 신탁계약에서부터 향후 체결할 신탁계약의 신탁재산, 신탁기간, 수익자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하여져 있고 공시되었던 점 ③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신탁계약은 계약서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의 정산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1순위로 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한 별도의 채무초과 상황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소외 C가 이 사건 신탁계약 후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주진암, 판사 이정형